

몽골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 지원협정

몽골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이하 '당사국' 이라 한다)는,

마약 및 기타 관세범죄의 예방 또는 적발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가능한한 최대한 협력하고자 하는 양국의 희망을 확인하고,

양국의 상호 이익에 부응하여 관세문제에 관하여 진행되어온 상당한 접촉을 고려하며,

정기적인 양자간 협의를 포함하여 양국 세관당국간의 접촉을 극대화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1. "세관당국" 이라 함은 몽골의 경우에는 관세총국을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한국관세청을 말한다.
2. "관세법" 이라 함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시행되는 법령을 말한다.
3. "범죄" 라 함은 관세법 위반행위 또는 동 미수행위를 말한다.

제 2 조 협력의 범위

당사국은 각국의 법률에 의한 것으로 하여, 그들 세관당국의 권한 범위안에서 동 세관당국을 통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가. 각자 관할안에서의 범죄의 예방·수사 및 진압에 있어 그리고 관세 및 기타 세세의 산정에 있어서 상호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양 세관당국의 적용 가능한 범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사람의 체포·구류 또는 수색이나 재산의 압수·압류 또는 수색과 관세·세금·벌금 및 기타 금전의 징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새로운 제도와 절차의 연구·개발 및 시험과 기타 수시로 공동노력이 필요한 문제에 있어서 협력한다.

제 3 조 기술지원

당사국의 세관당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관세문제와 관련된 기술협력분야에 있어 가능한 한 최대한의 협조를 상호 제공한다.

가. 상호 세관기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상호 유익한 경우의 세관 직원의 교류

나. 세관직원의 전문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훈련 및 지원

다. 기술적 금지 및 적발장비 사용에 있어서의 정보 및 경험의 교환

라. 관세문제, 금지 및 적발기술분야에 있어서 지명한 전문가의 교류

마. 관세법과 동 규정 및 절차와 관련된 전문적·과학적·기술적 자료의 교환

제 4 조 정보교환

당사국의 세관당국은 다음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조속한 시기에 상호 통보한다.

가. 타방세관당국의 관할안에서 범죄행위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

- 나. 타방세관당국 관할내에서 범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집행조치의 유형, 특히 범위 퇴치를 위한 특별수단
- 다. 범죄행위에 사용되어진 것으로 알려진 방법
- 라. 새로운 집행기법의 성공적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관찰 및 발견
- 마. 여객 및 화물통관상의 기법과 향상된 방법
- 바. 일방 세관당국의 관할로부터 반출되어 타방 세관당국의 관할내로 반입된 물품과 동물품의 통관에 사용된 세관절차
- 사. 목표로 지정된 사람·물품·선박·차량 및 항공기의 세관당국 관할 구역간 이동

제 5 조
지원요청의 형식 및 내용

1.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 지며, 이 요청에 부응하는데 필요한 모든 문서가 첨부된다.
2. 요청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요청하는 당국의 명칭
 - 나. 요청이 이루어지는 절차의 성격
 - 다. 요청의 목적 및 사유
 - 라. 파악되는 경우, 요청과 관련된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 마. 요청의 주제 및 관련된 법적 사안에 대한 개요
3. 긴급한 요청은 전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구두요청은, 요청 즉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된다.

제 6 조
전달방식

이 협정에 관련된 모든 요청은 양 세관당국 최고책임자가 이 목적을 위하여 권한을 부여한 공무원간에 전달된다.

제 7 조
지원제공의무의 면제

1. 요청 세관당국 스스로도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세관당국은 요청시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다. 이러한 요청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는 지원요청을 받은 세관당국의 재량에 속한다.
2. 지원요청을 받은 세관당국은 동국의 관련기관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안보·공공정책 또는 그 밖의 다른 중요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세관당국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제공을 거부하거나, 특정조건 혹은 요건의 충족하에 그 요청에 응할 것임을 명시할 수 있다.

제 8 조
비 용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한 세관당국은 지원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경비를 부담한다.

제 9 조
비 밀

질의나 제공된 정보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일방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질의나 정보제공시 수반되는 사유로 인하여 비밀로 취급되며, 그러한 정보, 문서 및 그 밖의 의사전달은 제공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 10 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에 발효되며 세관당국간 상호 합의후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의 교환으로 개정될 수 있다.

2. 이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6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자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3년 7월 28일 **울란바타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몽골어,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몽골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김 경 태